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이재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27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3.

발 의 자 : 이재관 · 황명선 · 송재봉  
이정문 · 윤준병 · 박용갑  
장철민 · 강준현 · 문진석  
복기왕 · 최혁진 · 최민희  
임호선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·시행하는 벤처기업육성계획에 벤처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(이하 “벤처기업제품”이라 한다)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및 초기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벤처기업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의22 신설).



##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1286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제3절에 제16조의2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2(벤처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) ① 공공기관(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)의 장은 벤처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,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(이하 이 조에서 “벤처기업제품”이라 한다)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.

② 공공기관의 장이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벤처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,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.

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

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
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구매계획의 통보에 관하여는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행	개      정      안
<p>법률 제21286호 벤처기업육성에   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<u>&lt;신   설&gt;</u></p>	<p>법률 제21286호 벤처기업육성에   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<u>제16조의22(벤처기업제품의 공공   기관 우선구매) ① 공공기관   (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  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  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   다)의 장은 벤처기업이 직접   생산하는 물품, 제공하는 용역   및 수행하는 공사(이하 이 조   에서 “벤처기업제품”이라 한다)   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공공기관의 장이 「중소기   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  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에   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  벤처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   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제품   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  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   를 포함시켜야 하며, 공공기관   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</u></p>

하여야 한다.

④ 중소기업부장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
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구매계획의 통보에 관하여는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.